

스쿨 교육과정 개발운영위원회 규정

제정 2011.11.1.

개정 2012.3.1.

개정 2017.9.25

개정 2019.9.30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(이하“본 대학”이라 함)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고 각 스쿨 및 전공의 인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 스쿨 교육과정개발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스쿨원장과, 스쿨소속교수, 산업체 인사를 포함하여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수 및 조직은 스쿨 자율로 정한다.

③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둔다.

제3조(위원장 등) ① 위원장은 스쿨원장으로 한다.

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제4조(임기)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장할 수 있다.

제5조(기능) 위원회는 산업의 흐름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주 임무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① 스쿨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

② 스쿨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사항

③ 스쿨 교육과정의 개편에 관한 사항

④ 스쿨 교과목의 학점 및 강의 시간 수에 관한 사항

⑤ 기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제반 주요사항

제6조(회의소집)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제7조(의결정족수)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사무) 본 위원회의 사무는 각 스쿨 창의행정실에서 담당한다.

제9조(준용) 이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3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- 4.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.